2026 업무편람과 새 법률 기준,
요건 확인부터 매년 4월 연구개발활동조사표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대표가 직접 설립하고 관리하는 법

박준영 지음

한국기업가치평가원 CTO · 기업파트너 별담 대표

기업부설연구소, 대표가 직접 설립하고 관리하는 법

지은이 박준영

펴낸곳 주식회사 한국기업가치평가원

펴낸날 2026-12-01 초판 1쇄

© 2026 주식회사 한국기업가치평가원.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내용을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배포하면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머리말

올해 봄, 화장품을 기획·유통하는 회사의 연구소 설립신고를 맡았다. 본사는 지방에 있고 연구소는 수도권 사무실 한 칸을 빌려 차렸다. 처음 접수할 때 그 방은 회의실이었다. 긴 회의 테이블 위에 연구원 세 사람의 노트북을 올려 두고 사진을 찍어 냈다.

접수하고 며칠 뒤 협회에서 보완요청 공문이 왔다. 고칠 항목이 다섯 개였다. 그중 하나에 "1인 테이블이 아닌 회의테이블에 노트북 단독배치는 개별 연구공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다. 조직도의 부서 이름이 현판과 다르다는 지적, 도면에 연구원 자리와 치수가 없다는 지적, 연구개발활동을 보여 주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함께 왔다.

기한은 10일이었다. 방을 연구공간과 휴게공간으로 나누고, 연구원마다 책상과 데스크톱 PC를 놓고, 사진을 다시 찍었다. 조직도와 도면을 고치고 연구개발활동개요서를 작업 화면 캡처가 들어간 3쪽짜리로 다시 썼다. 7일째 되는 날 보완 서류를 냈고 연구소는 인정을 받았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생각이 정리됐다. 연구소 요건은 중소기업이 갖추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다. 다만 심사는 서류와 사진만 보고 판단한다. 공간을 실제로 갖췄어도 사진과 도면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완이 나오고, 보완이 나오는 자리는 대부분 정해져 있다.

2026년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법과 시행령이 새로 시행됐고 업무편람도 바뀌었다. 예전 블로그 글이나 몇 해 전 자료를 보고 준비하면 틀린 기준으로 서류를 만들게 된다. 그래서 2026 업무편람과 새 법령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정리했다.

이 책을 옆에 두고 따라 하면 컨설팅 없이 연구소를 설립신고하고, 인정받은 뒤 해마다 해야 할 일까지 직접 챙길 수 있다. 1장부터 4장은 신고 전에 요건과 서류를 갖추는 내용이다. 5장과 6장은 온라인 접수와 보완요청 대응, 7장부터 9장은 인정받은 뒤 변경신고, 연구개발활동조사표, 세액공제 관리를 다룬다. 접수 직전에는 부록의 최종 검수표로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면 된다.

제도는 해마다 조금씩 바뀐다. 이 책은 2026년 11월 기준으로 썼다. 접수하기 전에 RND.or.kr 공지사항과 최신 업무편람을 한 번 확인해 두자.

*직접 준비하다 막히는 곳이 있으면 한국기업가치평가원에 문의하면 된다. 접수 전에 도면, 사진, 연구개발활동개요서를 보고 보완이 나올 만한 곳을 짚어 준다.

박준영

직접 진행한 인정서

이 책에 쓴 순서대로 내가 설립신고를 진행해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3곳과 연구개발전담부서 8곳의 인정서다. 회사명, 소재지, 문서번호는 가렸다.

*2026년 2월 전에 받은 인정서에는 옛 근거 법률(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 그 뒤에 받은 인정서에는 새 기업부설연구소법이 적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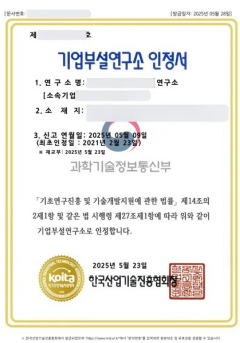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 연 구 소 명: 연구소
[소속기업]
2. 소 재 지:
3. 신고 연월일: 2025년 05월 09일
(최초인정일 : 2021년 05월 23일)
※ 재교부: 2025년 5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합니다.

2025년 5월 23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 연 구 소 명:
[소속기업]
2. 소 재 지:
3. 신청 연월일: 2026년 07월 [illegible]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합니다.

2026년 7월 27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 연 구 소 명:
[소속기업명:
2. 소 재 지:
3. 신고 연월일: 2023년 01월 [illegible]일
(최초인정일 : 2022년 [illegible]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합니다.

2023년 1월 27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 전담부서명: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기업]
2. 소 재 지:
3. 신고 연월일: 2025년 03월 [illegible]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합니다.

2025년 4월 14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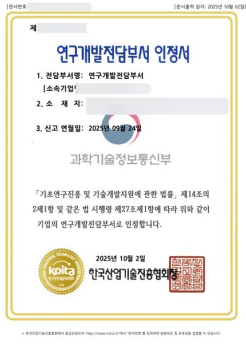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 전담부서명: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기업]
2. 소 재 지:
3. 신고 연월일: 2025년 09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합니다.

2025년 10월 2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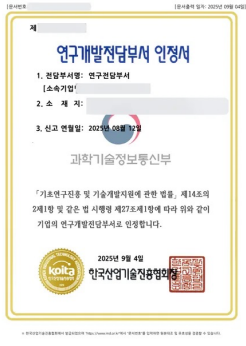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 전담부서명: 연구전담부서
[소속기업]
2. 소 재 지:
3. 신고 연월일: 2025년 08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합니다.

2025년 9월 4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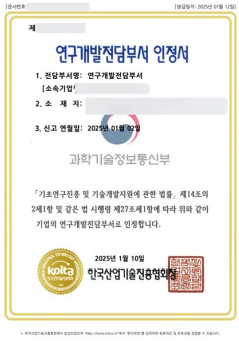
[문서번호:
[발급일자: 2025년 01월 12일]
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 전담부서명: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기업:
2. 소 재 지:
3. 신고 연월일: 2025년 01월 0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합니다.
2025년 1월 10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문서번호:
[문서유효 일자: 2025년 06월 30일]
제 호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 전담부서명: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기업
2. 소 재 지:
3. 신고 연월일: 2025년 05월 19일
(최초인정일: 2022년 3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합니다.
2025년 7월3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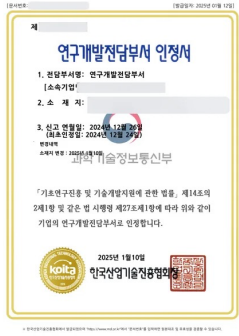
[문서번호:
[발급일자: 2025년 01월 12일]
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 전담부서명: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기업:
2. 소 재 지:
3. 신고 연월일: 2024년 12월 26일
(최초인정일: 2024년 12월 24일)
변경내역
소재지 변경 : 2025년 1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합니다.
2025년 1월10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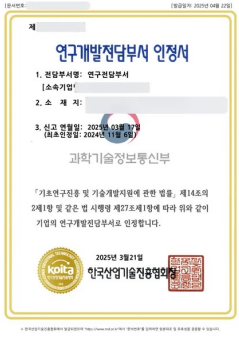
[문서번호:
[발급일자: 2025년 04월 22일]
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 전담부서명: 연구전담부서
[소속기업:
2. 소 재 지:
3. 신고 연월일: 2025년 03월 17일
(최초인정일: 2024년 11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합니다.
2025년 3월21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문서번호:
[문서유효 일자 : 2025년 04월 02일]
제 호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 전담부서명 :
[소속기업
2. 소 재 지
3. 신고 연월일 : 2025년 03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합니다.
2025년 4월 2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목 차

제1장. 신고 전에 확인할 것 연구소인가, 전담부서인가

- 영리기업이면 개인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다
- 주점·카지노·가상자산 중개업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 회사 규모로 필요한 연구원 수가 정해진다
- 인원이 돼도 전담부서로 내는 회사가 많다
- 2026년 2월부터 근거 법률이 따로 생겼다
- 인정받으면 세금·인력 지원을 신청할 자격이 생긴다

제2장. 연구원 요건 누가 연구원이 될 수 있나

- 인원 기준은 연구전담요원 수로만 맞춘다
- 자연계 학사나 기사 자격증이면 어느 회사든 된다
- 디자인·서비스 연구소는 전공을 묻지 않는다
- 대표이사는 연구원이 될 수 있나
-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은 인원에 넣지 않는다
- 직원 한 명씩 이 순서로 판정하면 된다

제3장. 연구공간과 기자재 사진과 도면으로 판단한다

- 벽과 문이 있어야 독립공간으로 본다
- 직원이 적은 회사는 50m² 분리구역도 된다
- 면적은 인원에 맞추고 회의실처럼 보이지 않게 한다
- 연구원 자리는 사무실처럼 세팅한다
- 연구장비가 따로 없으면 PC와 모니터에 연구 용도를 붙여 올린다
- 공유오피스·전대차·다른 주소도 조건을 맞추면 된다
- 도면은 층 전체도면과 내부도면을 나눠 그린다
- 현판은 연구공간 입구에 신고 이름 그대로 붙인다

- 사진은 도면에 찍을 위치를 표시하고 그 순서대로 찍는다

제4장. 신고 서류 준비와 작성 이름과 숫자를 서류마다 맞춘다

- 신고 서류는 대부분 회사가 직접 만든다
- 부서 이름은 개요서부터 인사발령까지 한 글자도 달라선 안 된다
- 개요서에는 회사 소개 말고 연구 내용을 쓴다
- 도면의 면적과 이름은 신고서와 한 번 더 맞춘다
- 조직도와 연구원 증빙은 4대보험 명부와 맞춘다

제5장. RND.or.kr 온라인 신고

- 신고 버튼은 연구소를 다 꾸린 다음에 누른다
- 로그인과 자가진단에서 먼저 막힌다
- 화면마다 자주 틀리는 칸이 따로 있다
- 파일은 한 장에 하나, 3MB 이하로 올린다
- 접수 뒤 열흘 동안 할 일

제6장. 보완요청에 대응하는 법

- 보완요청은 반려가 아니다
- 한 달 기한은 인정 뒤의 보완명령 이야기다
- A사는 다섯 항목을 7일 만에 고쳤다
- 자주 나오는 지적은 처음부터 막을 수 있다
- 보완서류는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낸다

제7장. 인정 뒤 변경신고 30일 안에 해야 할 일

- 바뀐 날부터 30일, 1년을 넘기면 취소 사유
- 신고 대상과 낼 서류를 표 한 장으로
- 연구원이 들어오고 나갈 때 챙길 것
- 연구원이 빠져 인원 기준에 못 미치면

- 상호, 소재지, 대표자가 바뀌면 인정서도 다시 뽑는다
- RND.or.kr 변경신고 화면 순서

제8장. 매년 해야 하는 사후관리

- 1년 일정은 달력에 먼저 넣는다
-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4월 말까지 내지 않으면 취소된다
- 연구원은 연구소 안에서 연구만 한다
- 연구노트와 신고 서류는 공문이 오는 날 바로 낸다
- 거짓 신고로 취소되면 1년간 다시 신고할 수 없다
- 과태료는 2029년 1월 31일까지 부과유예다

제9장. R&D 세액공제 받기 전에 따질 것

- 세액공제, 꼭 받아야 하나
- 내 회사가 어느 쪽인지 먼저 고른다
- (가) 연구하는 회사는 하던 기록을 서류와 맞추면 된다
- 공제 대상 비용은 좁게 잡는다
- (나) 공제를 받기로 했다면 첫날부터 세팅할 것
- 세무사에게 맡길 일과 대표가 챙길 일

부록. 실무 양식

- 부록 1. 연구소 설립 자가진단표
- 부록 2.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
- 부록 3. 접수 전 최종 검수표
- 부록 4. 연간 사후관리 달력
- 부록 5. 근거 법령 조문 색인

제1장

신고 전에 확인할 것
연구소인가, 전담부서인가

기업부설연구소, 대표가 직접 설립하고 관리하는 법

들어가기 앞서

우리 회사가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면?

연구소에 필요한 연구전담요원이 2명으로 줄어든다. 소기업은 3명, 중기업은 5명이 있어야 하는데 벤처기업은 규모와 상관없이 2명이면 된다. 신고할 때 유효기간이 남은 벤처기업확인서를 내야 하고, 확인이 만료되면 소기업 3명, 중기업 5명 기준으로 돌아간다.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그 전에 재확인을 받거나 연구원을 채우자(7장 참고).

연구소로 갈지 전담부서로 갈지는 회사가 자격을 갖춘 연구원을 몇 명 세울 수 있느냐로 정해진다. 그 전에 회사가 신고할 수 있는 기업인지, 업종이 제외 대상은 아닌지, 연구 말고 다른 일을 하는 직원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 확인 없이 공간부터 꾸미면 인테리어 비용만 날릴 수 있다.

영리기업이면 개인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는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이 회사 안에 두는 연구 조직이다. 신고할 수 있는 곳은 상법상 회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개인기업 포함), 지방공사·지방공단, 공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이다. 시행령은

농업법인·어업법인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법인 아닌 단체도 넣었다.

대학과 각급 학교, 민법상 사단법인·재단법인 같은 비영리기관은 신고할 수 없다. 기능대학·직업훈련기관과 의료법인도 마찬가지다.

연구원 말고 다른 직원이 있어야 한다

연구소는 회사의 하부조직이고 연구만 맡는다. 그래서 회사에는 생산·판매·관리를 맡는 상시종업원이 따로 있어야 한다. **대표이사는 이 종업원으로 세지 않는다.** 대표와 연구원만 있는 회사는 연구소도 전담부서도 인정받지 못한다.

생산을 외주로 돌리는 회사라도 상시종업원은 최소 1명 있어야 한다. 경영지원이나 영업을 맡을 직원을 먼저 채용해 4대보험에 가입시켜 두자.

*근거: 법 제2조 제1호, 영 제3조, 영 제9조 제1호, 2026 업무편람 p.10, p.12, p.39

* 대표와 연구원만 있는 회사라면 연구 외 업무를 맡을 상시종업원부터 채용해야 한다.

주점·카지노·가상자산 중개업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연구 분야는 과학기술 분야와 서비스 분야 모두 가능하다. 다만 시행령 [별표 1]의 유흥 등 관련 업종은 빠진다.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다.

*편람 본문은 6개 업종이라고 적었지만 표와 시행령 별표 1에는 가상자산 중개업까지 7개가 있다. 7개 모두 제외로 보면 된다.

산업디자인을 과학기술 분야로 신고하려면 제품디자인이나 포장디자인이어야 한다. 시각디자인, 인테리어 같은 환경디자인, 서비스디자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서비스 분야로 신고하려면 매출이 가장 많은 주업종이 서비스업이어야 한다.

연구로 쳐 주지 않는 일

업종이 맞아도 하는 일이 연구개발활동이 아니면 인정받지 못한다. 연구개발활동은 사업화 전까지의 과정만 말한다. 품질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프로세스 개선, 양산 제품 유지보수는 빠진다. 오픈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개발언어만 바꾸는 SW 개선도 마찬가지다.

돈을 받고 남의 연구를 대신하는 외주 R&D 용역이 주된 일이어도 안 된다. 공동연구나 국책과제 안에 위탁과제가 일부 들어간 경우만 인정할 수 있다.

*근거: 영 제2조 제1호, 영 [별표 1], 2026 업무편람 p.12~14

* 연구 주제를 정하기 전에 그 일이 사업화 이전 단계의 연구인지부터 따져 보자.

회사 규모로 필요한 연구원 수가 정해진다

연구소의 인적요건은 연구전담요원 수로 판단한다. 연구전담요원은 학위·자격증·경력 요건을 갖추고 연구 업무만 하는 직원을 말한다.
연구소는 회사 유형에 따라 2명에서 10명까지 필요하고, 전담부서는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1명이면 된다.

- 벤처기업,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2명 이상
- 소기업: 3명 이상(창업일부터 3년까지 2명)
- 중기업: 5명 이상(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 3명)
-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국외 연구소 5명 이상

회사 유형은 서류로 증명한다. 벤처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중기업 구분), 중견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연구원·교원 창업기업은 이전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경력(퇴직)증명서, 휴직·겸직으로 창업했다면 겸직허가서를 낸다.

셀 때는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 다른 업무를 겸하는 연구소장을 빼야 한다. 이 사람들은 연구전담요원 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직원 한 사람씩 자격을 판단하는 방법은 2장에 정리했다.

*근거: 영 제6조 제1항, 규칙 제2조 제1항, 2026 업무편람 p.9, p.15~16

* 소기업이라면 창업일을 확인하고 3년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자.

인원이 돼도 전담부서로 내는 회사가 많다

두 조직은 연구전담요원 수가 가장 크게 다르다. 연구공간은 둘 다 벽체와 별도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된 독립 공간이어야 하고 연구기자재도 갖춰야 한다.

구분	연구소	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	회사 유형별 2~10명	1명 이상
연구소장	반드시 임명	편람에 지정 의무 없음
50m² 이하 칸막이 구분	중소·벤처 등	중소·벤처 등과 일부 대·중견
현판 명칭 예	기업부설연구소, R&D센터	연구개발전담부서, R&D팀
부동산 지방세 감면	해당	해당 없음
전문연구요원	해당	해당 없음
R&D 세액공제	해당	해당

자격 갖춘 사람이 1명뿐이면 전담부서로 신고한다. 그런데 연구소 기준 인원을 갖춘 회사도 전담부서로 내는 경우가 많다. R&D 세액공제는 연구소와 전담부서가 똑같이 받고, 직원은 언제 늘고 줄지 모르기 때문이다.

기준 인원을 딱 맞춘 연구소는 1명만 퇴사해도 인정기준에 못 미쳐 보완명령을 받는다. 전담부서는 연구전담요원이 1명만 남아 있어도 유지된다. 그래서 나는 지방세 감면이나 전문연구요원이 꼭 필요한 회사가 아니면 전담부서를 먼저 권한다. 인원이 넉넉해지고 연구소 혜택이 필요해지면 그때 연구소로 바꾸면 된다. 이때는 변경신고가 아니라 신규 설립신고를 한다. 새 조직이 인정된 뒤에 기존 조직이 취소되므로 중간에 비는 기간은 없다.

*근거: 영 제6조 제1항, 규칙 제3조·제4조, 2026 업무편람 p.10, p.15, p.25, p.31, p.81, p.171~172

* 연구소용 건물을 사거나 짓는다면 지방세 감면 때문에 연구소 요건을 갖추는 쪽으로 계획해야 한다.

사례

가상 예시: 창업 2년 차 소기업 B사에는 대표(기계공학 학사), 설계 직원 1명(기계공학 학사), 영업 직원 1명이 있다.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은 2명이면 연구소를 낼 수 있고, 자격 있는 대표도 연구전담요원을 겸할 수 있다. 대표와 설계 직원으로 연구소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창업 3년이 지나면 대표를 빼고 3명이 필요하다. 그 전에 2명을 더 뽑을 계획이 없다면 설계 직원 1명으로 전담부서를 내는 편이 관리하기 쉽다. 영업 직원은 어느 쪽이든 상시종업원으로 필요하다.

점검표

- ☐ 영리기업이고 학교·비영리법인·의료법인이 아닌지 확인한다
- ☐ 주업종이 별표 1 제외 업종이 아닌지 확인한다
- ☐ 대표를 뺀 연구 외 상시종업원이 있는지 본다
- ☐ 회사 유형과 확인서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 ☐ 자격 갖춘 연구 전담 인원을 세어 연구소 기준과 비교한다
- ☐ 지방세 감면이나 전문연구요원이 필요하면 연구소로 정한다

2026년 2월부터 근거 법률이 따로 생겼다

2026년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기업부설연구소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됐다. 이전에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안의 일부 조항으로 운영했다. 인원 기준과 '먼저 설립하고 나중에 신고하는' 절차는 그대로이고, 달라진 점은 표에 모았다.

항목	기존	2026.2.1. 이후
연구공간 벽체	고정벽체와 출입문	분리·이동 벽체도 허용
부소재지	1곳만 가능	2곳 이상 가능
주간 대학원생	원칙적으로 불가	국가R&D 참여 석사과정생 예외
연구관리직원	다른 업무 겸임 불가	다른 업무 겸임 가능
보완명령 기간	1개월	1개월, 신청하면 2개월 범위 연장
현장조사	현지확인	거부·방해하면 인정취소
직권취소 뒤 자진취소	가능	불가

거짓·부정 행위에는 과태료가 생겼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연구개발 실적 같은 제출서류를 작성하면 500만 원 이하,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 인정 없이 연구소라고 내세우면 200만 원 이하다. 2029년 1월 31일까지는 부과가 유예된다. 부정한 인정을 도와준 사람도 과태료 대상이다. 대행을 맡기더라도 서류 내용은 대표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 제10조, 법 제27조, 2026 업무편람 앞 안내면(PDF p.3)

* 인정받기 전에는 명함이나 홈페이지에 '기업부설연구소'라고 쓰지 말자.

인정받으면 세금·인력 지원을 신청할 자격이 생긴다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인정받으면 조세, 자금, 인력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도마다 요건과 신청 절차가 따로 있고, 인정은 그 요건 가운데 하나다. 중소기업 기준으로 자주 쓰는 제도를 추렸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당기분 25% 또는 증가분 50%
-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월 20만 원 이내 소득세 비과세
- 연구용 수입물품: 관세 80% 감면
- 연구소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60%(수도권 45%) 감면, 연구소만 해당
- 전문연구요원(연구소만),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국가R&D 신청자격·가점, 벤처확인 연구개발기업 유형(연구소 보유 기업)

이 수치는 2026년 3월 편람 기준이다. 법이 바뀌면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제도별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세액공제 요건과 준비 서류는 9장에서 따로 다룬다.

혜택은 인정을 유지하는 동안만 받는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았다가 취소되면 인정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가 배제된다. 인력이나 면적이 바뀌었는데 변경신고를 늦게 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근거: 2026 업무편람 p.78, p.104, p.171~180

* 받고 싶은 지원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의 요건을 회사가 채우는지 하나씩 따로 확인하자.

이 장 정리

- 사업자등록증과 확인서로 신고할 수 있는 기업인지, 제외 업종은 아닌지 확인하자.
- 대표를 뺀 연구 외 상시종업원이 있는지 4대보험 가입자명부로 확인하자.
- 자격 갖춘 연구 전담 인원을 세어 회사 유형별 연구소 기준과 비교하자.
- 인원과 받고 싶은 지원제도를 보고 연구소와 전담부서 가운데 하나를 정하자.